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 포함〉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4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0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

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생략)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1.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서 신설>

③·④ (생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대학·원격대학-----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사람. 다만,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2. 개정배경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응시요건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사람¹⁾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시 ‘원격대학’¹⁾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왔음.

- 지금까지 원격대학 졸업자 중 2급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는 2,071명으로, 이는 전체 합격자 14,056명 중 14.7%에 이르는 수치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서는 원격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현재 언어재활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임.

□ 그런데 최근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요지), 2024년 10월 31일에는 심리불속행 기각²⁾으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음(2024두48268).

□ 따라서 기존에 원격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2024년 제13회 시험(2024.11.30. 실시함)부터는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음.

3. 검토의견

□ 이에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고, 부칙에 특례 및 경과조치를 둬으로써,³⁾

원격대학을 졸업한 기존 합격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개정안 시행 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응시자격 요건을 인정

2)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3) 개정안 부칙 제2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격대학에서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고자 하는 취지임.

언어재활사와 유사한 장애인 전문인력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에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인정⁴⁾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우려 사항인 원격대학의 경우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실습과목의 운영 형태(대면 실습장소 확보 등) 등을 보다 철저하게 정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단서조항에 따른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참고자료

4)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원격대학 학위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바 있음.

5)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및 [별표 6의2]).

- 또한 부칙을 통하여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사법부의 최종결정을 입법으로 변경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임.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의 경우, 기존 시험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부정을 요구하는 비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당사자의 이익이 보호가치가 큰 것인지의 형량 문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그간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재활에 기여해 왔으며, 원격대학 또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으로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와 응시가능성을 신뢰하고 원격대학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입학한 재학생·졸업생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장실습 기준 구체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 필요

나. 대구사이버대학교 등(찬성)⁶⁾

-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100%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언어재활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언어재활사 양성 과정 및 학위과정은 원격교육을 새로운 교육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원격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종류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

다. 언어재활사협회 등(반대)⁷⁾

- 언어재활사는 고도의 실무 능력과 임상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으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면 실습과 임상 경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기존 전문

6) 이와 유사한 개정안 찬성 취지로 법무법인 바른, 5개 사이버대학교(영진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국제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학교), 3개 특수학교(포항명도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광명학교), 41개 아동발달센터(아이행복언어심리상담센터 등) 및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예천군지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FM 문화예술인권협회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7) 이와 유사한 개정안 반대 취지로 44개 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18개 단체·기관(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사단법인 한국언어치료학회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가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 법원은 법해석을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와 배치되는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기존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

원격대학의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원격대학 포함 여부와 현장실습 규정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숙의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요지〉

☐ 소송 개요

- (사건) 2023누49815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
- (원고) 언어재활사 자격보유자, 11회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일동
-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판결주체) 서울고등법원

☐ 판결 주문

- 피고의 2022. 7. 11.자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 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을 취소한다.

☐ 판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복지법」이 2급 언어재활사와 관련해서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을 특정하고 있으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음.
 - 자격요건 획득을 위해 120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되나, 원격대학에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는 이상 원격대학이 당연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참고자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및 [별표 6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제57조의4제2항 관련)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비고

-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되,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시간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중 9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